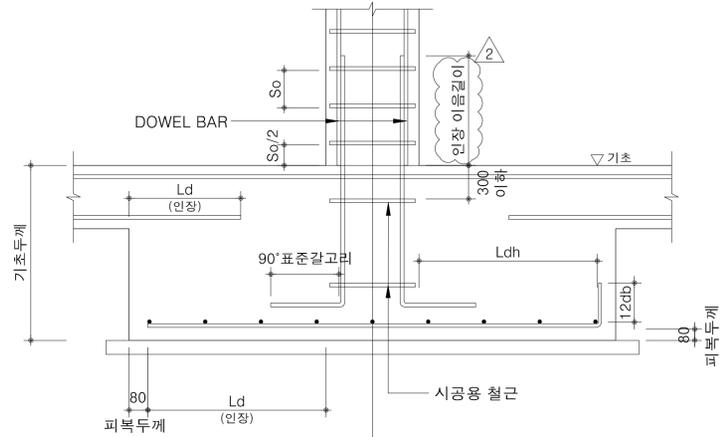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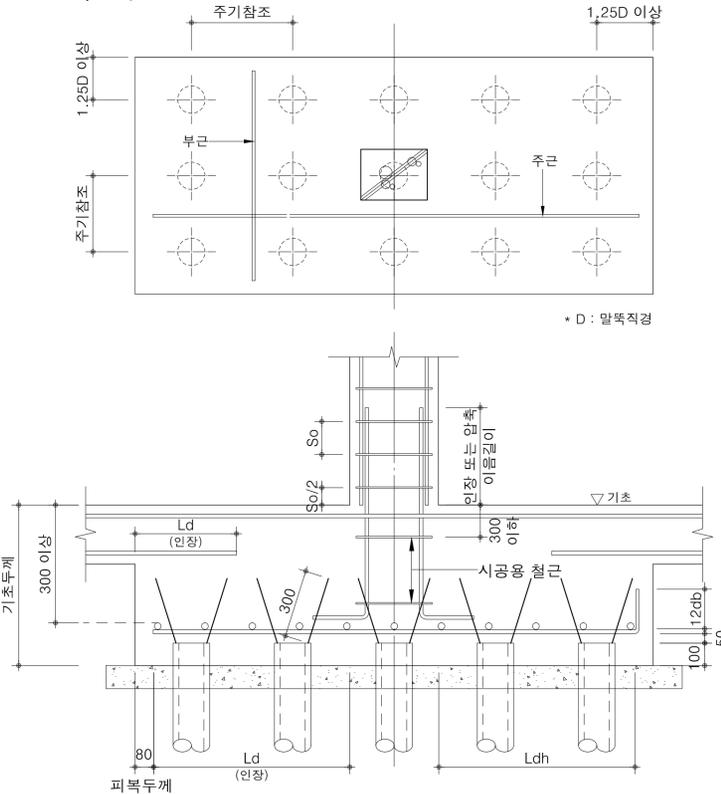
7. 기초 배근

7.1 직접 기초



- 1) 지반의 허용지내력(f_e)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.
- 2) 동일건물내 설계허용지내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다.
- 3)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철근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.
- 4) 독립기초인 경우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기초 단부까지의 거리가 긴 방향의 하부 철근을 최하단에 배근한다. (줄기초인 경우는 Wall의 직각방향 철근)
- 5) 기초철근이 인장철근 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 90°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확보한다.

7.2 말뚝 기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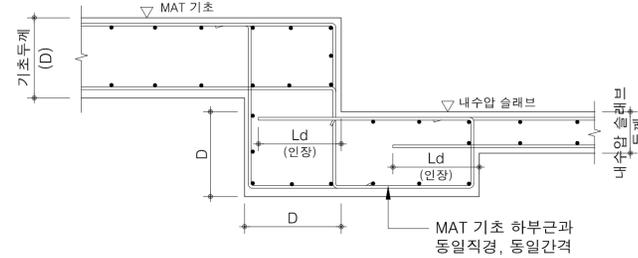


- 1) 침하를 고려한 말뚝의 허용지지력(f_p)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.
- 2) 표기되지 않은 PILE 중심간격은 타입말뚝의 경우 2.5D 이상, 기초측면과 PILE 중심까지 간격은 1.25D 이상으로 한다.
- 3)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철근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.
- 4)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파일중심까지의 거리가 긴쪽을 하부근으로 배근한다.
- 5) 말뚝두부 상세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.
- 6) 기초철근이 인장철근 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 90°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확보한다.
- 7) 말뚝기초의 내진상세는 KDS 41 19 00 : 4.5.3.13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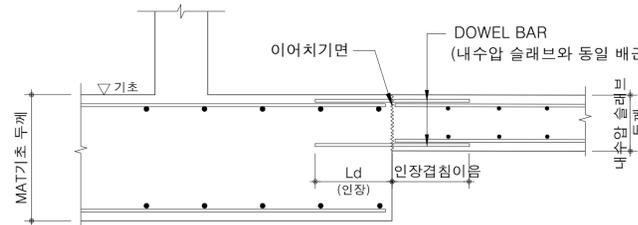
- 6) 말뚝기초의 내진상세는 KDS 41 19 00 4.5.3.13을 따른다.
내진설계범주 D로 분류된 구조물에 사용하는 말뚝은 기초판과의 구속에 따른 인발력 및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축력을 조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, 말뚝의 인장강도의 25%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판속으로 정착하여야 한다.
또한, 말뚝머리의 정착은 ① 종방향 주철근 직경의 12배
② 말뚝 최소직경의 1/2
③ 300mm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.

7.3 기타 배근

(1) 기초 단차부 배근



(2) 불연속면(이어치기면) 기초 배근 (ex. APT 주동과 지하주차장 기초 접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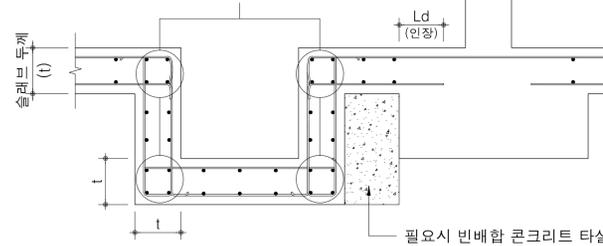


(3) 집수정 배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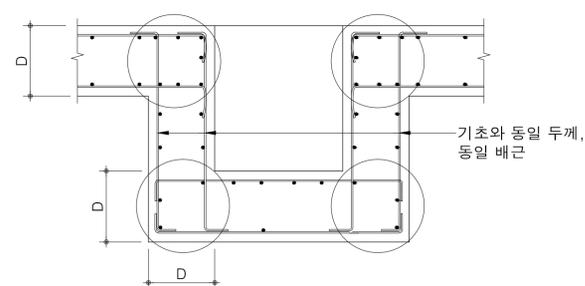
- * 집수정 크기가 1500X1500X1500(H) 이하인 경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집수정 단면상세는 다음에 따른다.

1) 집수정 상세도-1 (슬래브에 생기는 경우)

- * 정착은 2.1의 CASE-1~2에 따름



2) 집수정 상세도-2 (매트기초에 생기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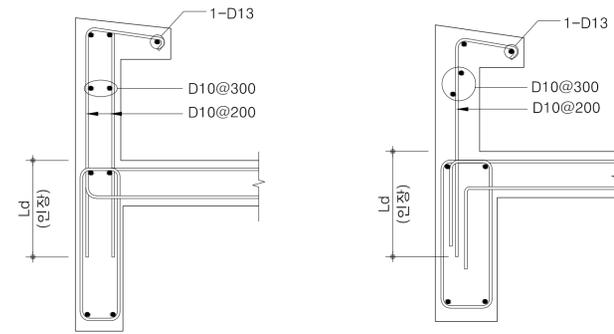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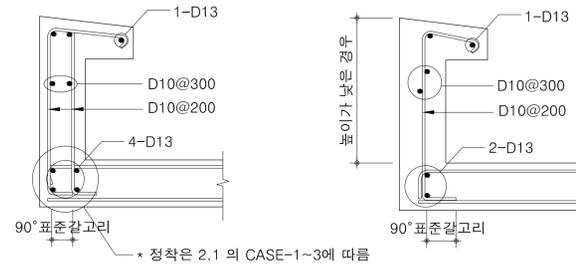


- * 기초에 부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* 상부구조물의 하중이 큰 경우 단차부위는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.
- * 정착은 2.1의 CASE-1~2에 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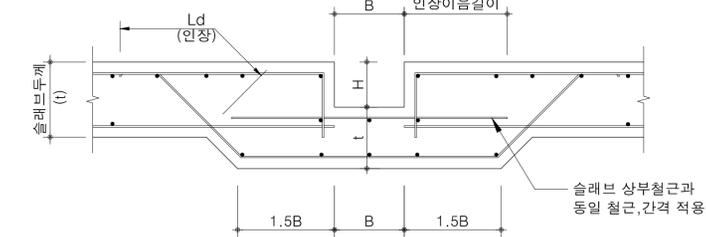
8. 기타 배근

8.1 난간 상세

- * 단배근일 경우에는 수평철근을 잇갈림 배근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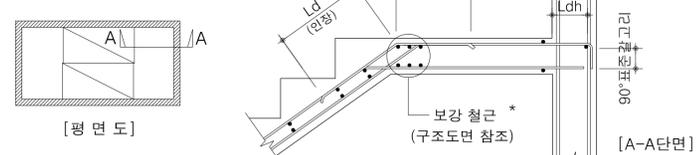


8.2 트렌치 상세 (H<150mm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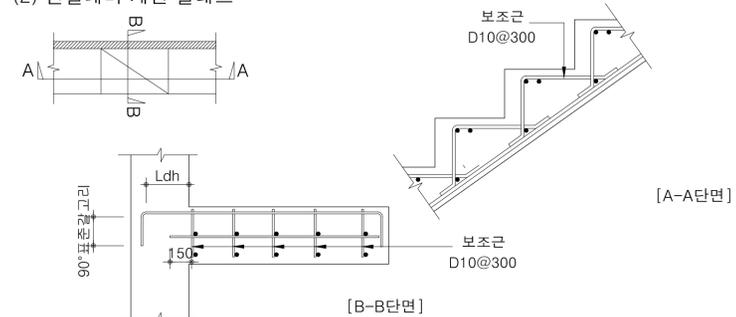
8.3 계단배근 상세

(1) 양단지지 계단 슬래브



- * 계단 시작부분의 위치가 상이하여 보강철근의 배치가 안되는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.

(2) 캔틸레버 계단 슬래브



NOTE

REVISIONS		
7		
6		
5		
4		
3		
2	2024.09.	검토수정
1	2024.07.	검토수정
NO.	DATE	DESCRIPTION

PROJECT TITLE

DRAWING TITLE

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사항-15

DATE	SCALE	A1	NONE
		A3	NONE

DRAWN BY

CHECKED BY

APPROVED BY

DESIGNED BY

DRAWING NO.

S - 015